



서대문구

『청년주택공급과 서대문구 청년주거권네트워크형성』을 위한

서대문구-민달팽이유니온 업무협약서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(이하 “서대문구”)와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빈곤층 등에 대한 청년주택 공급사업과 서대문구 지역사회 내 청년주거권네트워크 형성으로 ‘청년이 떠나지 않는 서대문구’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[목적]

이 협약은 서대문구 청년 주거빈곤층 등에 대한 청년주택 공급사업과 서대문구 지역사회 내 청년주거권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서대문구와 민달팽이유니온 상호간의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협력범위]

서대문구와 민달팽이유니온은 위 청년주택 공급사업과 및 청년주거권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하는데 동의하며, 이 협약에 따른 각종 사업은 상호 협의 하에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추진한다.

제3조 [협력분야]

서대문구와 민달팽이유니온은 아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공동 협력사항

- 가. 청년 주거빈곤층 등에 대한 청년주택 공급사업
- 나. 서대문구 청년주거권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청년역할 증대사업 공동 추진
- 다. 청년 주거빈곤층 등에 대한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 공동 추진
- 라. 청년 주거빈곤층 등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정책자료 및 정보 공유

2. 서대문구 협력사항

- 가. 서대문구 청년주거권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행정지원
- 나.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건립대상지의 물색, 입주자선정 및 자원 협조
- 다. 청년 주거빈곤층 등의 주거실태 및 욕구 조사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등

3. 민달팽이유니온 협력사항

- 가. 서대문구 청년주거권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요청
- 나. 청년 주거빈곤층 등의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, 결과분석으로 서대문구청년주거 진단
- 다. 청년 주거빈곤층 등을 위한 사업제안 및 정책적 제언 등

제4조 [신의협력]

서대문구와 민달팽이유니온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본 협약 이외의 목적 및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(열람 또는 복사 포함)을 하지 말아야 한다.

제5조 [협약기간]

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,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협약의 효력이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 [기타]

- ① 이 협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 분야별 세부약정을 별도 추진한다.
- ② 서대문구와 민달팽이유니온은 이 협약서에 날인하고,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3월 31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구청장 문 석 진

민 달 팽 이 유니 온
위원장 임 경 지